

2023학년도

## V. 학생생활인권 규정





## 1. 총 칙

### 제 1 조【명칭】

이 규정은 ‘정명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정명고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돋고,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여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아래 각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제 4 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1.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5 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설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 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안전부장으로 한다. 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학년부장, 학생안전부 담당교사를 상임위원(간사)으로 하되,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학생안전부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4. 학생생활 교육 절차는 다음 단계에 따른다.

단계	내용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위반의 경증을 판단</li><li>가벼울 경우 현장 훈계·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li><li>중대할 경우 학생안전부 교사에게 인계</li></ul>
관찰 면담 (위반 경증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학생안전부 교사가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해 1차 판단</li><li>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안의 경증을 고려하여 처리</li><li>-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li></ul></li></ul>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림</li><li>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li><li>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li><li>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li></ul>
1차 심의 판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li></ul>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생활교육 의결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학생안전부 담당 교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li><li>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기변론서 등)</li><li>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li><li>- 학생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을 청</li></ul></li></ul>

	<p>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li> <li>-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함을 고지</li> </ul>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생활교육위원회장은 학생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개최)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한다.</li> </ul>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안전부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li> <li>·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li> <li>·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li> <li>·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li> <li>·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학생생활교육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li> <li>- 학생 생활교육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li> <li>- 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과정 및 의결 후에 그 내용에 대하여 공지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li> <li>-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li> </ul>
학교장 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li> </ul>
학생 및 보호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학생생활교육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li> </ul> <p>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p>

### 제 7 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학생생활교육 및 학생생활교육 조치, 기타 학생 지도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 제 8 조【정족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9 조【재심 청구】

1. 학생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 재심 여부를 검토·심의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교 내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며 재심청구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단, 조치 결정 통보는 우편 사무가 지연될 경우, 대면 또는 전화문자를 통한 연락과 수신이 분명한 경우 조치 결정 통보 된 것으로 처리한다).
3. 재심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받아 보관한다.

## 제 10 조【기록 및 사무처리】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학생안전부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 3. 학생생활

### 제 1 장 교내생활

#### 제 11 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 12 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보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 13 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 14 조【교우관계】

학생들은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체험활동, 자치활동 등을 통해 연대의식을 갖는다.

#### 제 15 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언어·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전화나 이메일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폭력 피해 신고함
  - 3) 지역교육청 117
  - 4)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 5) 경찰청 범죄신고 112
  - 6) 부천소사경찰서 1566-0112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폭력 피해 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안전부 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5. 학교폭력 관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55호)」 제13조 및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제 16 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도록 한다.

#### 제 17 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 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8 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제 19 조 【용의복장】

용의 복장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 제 20 조 【출결사항】

학생들의 출결사항은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

#### 제 21 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 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 2 장 교외생활

### 제 22 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궁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에게 예의를 다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학생 노동인권보호 관련하여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 제 23 조 【보호자의 역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 제 3 장 정보통신

### 제 24 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학생은 본인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정정할 권리가 있다.

### 제 25 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업 시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평가 고사(시험)가 진행 중인 경우 수능시험 관리 규칙에 준하여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금한다.
3.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 등은 학교 기물이므로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5.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6.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 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7.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 장 학생회

### 제 26 조 【명칭】

이 회는 정명고등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라 한다.

### 제 27 조 【목적】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진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8 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는 그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중지된다.

### 제 29 조 【권리 및 의무】

1. 학생회 회원은 이 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 한다.
2.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생활위원회의 지도·자문을 받는다.

### 제 30 조 【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민주 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특별 활동
2.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의 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5. 학생 복지에 증진 및 각종 봉사 활동
6.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의 방재 및 지원 활동
7. 기타 학생활동과 학생회의 목적에 해당되는 활동

### 제 31 조 【효력정지】

1.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2. 이 회의 의결 사항이 학칙에 위배될 때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제 32 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 33 조 【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2. 학년회장 및 부회장, 각 부의 부장 1인(2학년), 차장 1인(1학년)

### 제 34 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자료총괄부	학생회 물품 및 재정 관리, 학생회 활동 기록(회의록, 사진, 동영상 등)
행사기획부	학생회 행사 계획 수립(회장단)
홍보편집부	행사 홍보 및 SNS운영
교육급식부	교내 급식 여론 조사 및 의견 전달
동아리부	동아리 활동 및 축제 계획 수립
학생복지부	학생 복지활동 업무
환경관리부	교내·외 및 지역사회 환경 정비

### 제 35 조 【직무 및 자치활동】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학생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의 부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4. 학생회장은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생회 활동을 위해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 요청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 36 조 【임원의 선출 및 자격】

1. 회장, 부회장 및 학년 회장, 부회장은 전체 학생에 의하여 민주적 절차와 방법(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따라 선출 다수 득표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2. 각부서의 부장(2학년) 차장(1학년)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고 회장이 추천한다.
3.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 교칙 위반으로 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
  - 3) 선거일 기준 당해 연도 회장, 부회장은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 4) 담임교사의 추천 및 교사 3인의 추천을 받은 자
  - 5) 학생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4. 임원 및 부장 선출

- 1) 임원 : 각부의 부장, 차장으로 회장단이 추천하며 대의원에서 임명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임명한다.
- 2) 각부 부장 : 총무부, 행사기획부, 행사지원부, 학생인권부, 문예부, 체육부, 봉사부, 환경부, 사이버부 등 9개부의 부장(2학년)과 차장(1학년)은 회장단이 추천하며, 대의원회에서 임명 동의를 얻는다.

#### 제 37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2학기)으로 한다.
  - 1) 임기 중이라도 학생생활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
  - 2) 전학 또는 “학교 내 봉사활동” 이상의 학생생활교육을 받은 자는 그 직위를 해제한다.
  - 3) 결원시 잔임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결원시 잔임 기간이 한 학기 이하인 경우 회장직은 부회장, 부장직은 차장이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수행한다.

#### 제 38 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1. 구성

-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 차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2. 기능

-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건의.
- 2)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3)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 임명 동의권
- 4)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한 안건의 처리
- 5) 학교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
- 6)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 3. 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4.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6. 학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1주일 전에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39 조 【집행위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2. 기능

-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사업계획
  -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4) 기타 중요한 의안
3. 회의 : 집행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승인 한 경우에도 소집한다.
4. 예산편성 :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복리비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의 자문을 거쳐 예·결산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결산 :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학생복리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자문 및 예·결산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회계연도 : 학생회의 회계연도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학생복리비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자문 및 예·결산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0 조 【학생회자문위원회】

### 1. 구성

- 1) 학생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안전부장, 간사는 학생회 지도교사로 한다.
  - 3) 학생회 각 부서별 주무는 관련 부서 부장교사로 하며, 보좌는 관련 업무 담당 교사로 한다.
2. 기능 :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학생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와 학급회의 임원 선출, 임명에 관한 사항
  -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41 조 【학급회 규정】

1. 목적 : 집단생활을 통하여 협동적이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갖게 하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기른다.
2. 활동내용 : 학급회 활동은 협의활동과 위원활동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의 활동
    - 가) 위원조직과 활동계획 수립
    - 나) 학급생활 개선
    - 다) 생활 규율 준칙 마련
    - 라) 학급환경 관리
  - 마) 학예, 보건, 체육, 레크리에이션, 보고회, 계절행사, 교우관계, 생활반성, 근로 봉사활동 등에 대한 학급계획 수립

바) 학급행사, 학년행사 등에 대비하여 학급에서 사전에 할 일

2) 위원활동

가) 게시, 위생, 도서, 수집, 비품, 음료수, 미화, 청소, 안전, 질서 등 학급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위원활동

나) 교과학습, 학예, 체육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활동

다) 수시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3. 조직

학급회 조직으로는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부회장, 서기, 총무부, 학습부, 홍보부, 체육부, 미화부, 교육급식부, 봉사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에 부장, 차장 및 부서원들을 둔다.

4. 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위원의 선출 : 학급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2) 위원의 임기 : 학급자치회장과 학급자치부회장은 학기제로 한다(단, 연임할 수 있다.)  
기타 위원은 학년제로 한다.

3)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부회장 자격

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나) 당해 학년에서 본 규정의 제56조 각 항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

4)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의 임명 : 학급회에서 당선된 학생을 학교장이 임명한다.

5) 학급 위원의 직위 해제 : 전학 또는 본 규정의 제56조 각 항의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직위를 해제한다.

6) 보궐선거

학급 위원에게 전학 또는 학생생활교육 등의 사유로 결격 사유가 발생 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5. 위원의 임무 : 학급회 조직에 따른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자치회장 : 학급회 의장, 학급통솔, 출석파악, 교과시간 및 집회 시 인원보고, 담임 교사의 지시사항 전달, 교실환경 구성, 학습 분위기 조성, 학생회 대의원 등의 업무에 관한 일

2) 학급자치회부회장 : 학급자치회장 부재 시 학급자치회장을 대리한다.

3) 생활협약부 : 학급자치회부회장 부재 시 부회장 대행, 학급회 회의록, 학급일지 및 출석부 관리, 회계일반, 생활안내, 불우이웃 돕기, 선행사례 발굴, 학급자치활동 물품 구입, 기타 총무에 관한 일

4) 스스로 학습부 : 수업시간 학습준비, 노트 및 교과서 지침상황 파악, 자기주도 학습, 과제물 확인, 학습간행물 관리, 또래 멘토멘티 활동, 학급 도서 관리, 기타 학습에 관한 일

5) 환경·예술부 : 환경 캠페인, 환경 게시물의 배치, 각종 학교 행사의 홍보, 교실 환경 구성 및 청소에 관한 일 분리수거, 특별활동 등에 관한 일

6) 신나는 체육부 : 학급 행사 활동 및 학급 체육 활동에 관한 일, 학교 어울림 한마당(체육대회, 테마 여행, 진로 체험 활동 등), 각종 문화 행사 주관

7) 교육급식부 : 교내 급식 관한 일

8) 이벤트 축하부 : 학급 파티, 마니또 행사 주관,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친구 쟁여주기

9) 민주시민부 : 학급 캠페인(학교폭력예방), 친구 사랑의 날(사과 편지 전하기)

10) 사이버부 : 각 과목별 공지사항과 수행과제 등 반통에 전달, 교실 컴퓨터 연결선

관리, 핸드폰 관리, e-알리미 전달 및 관리  
11) 서기 : 학급회 회의록, 출석부 관리 등

6. 회의진행순서 : 학급회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한다.

- 1) 개회사(의장)
- 2)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 3) 출석확인(생활협약부장)
- 4) 지난주 회의록 낭독(서기)
- 5) 의장인사 및 지난주 반성(의장)
- 6) 회의주제 제시(의장)
- 7) 주제 토의
- 8) 기타 토의
- 9) 건의 사항
- 10) 담임교사 지도조언
- 11) 교가 제창
- 12) 폐회사(의장)

7. 정족수 및 의결

학급회의 의사 정족수 및 표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8. 학급회 유의사항 : 학급회의 진행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1) 토의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 2) 토의 의제는 학급회 개최 전일 종례 시간에 사전 발표한다.
- 3) 토의 의제는 사전에 지도교사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다.

#### 제 42 조【선거관리위원회 규정】

1. 명칭 : 본회는 정명고등학교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2.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3학년 학생회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현 학생 회장이 겸임한다.

2) 선거관리위원과 선거 사무에 관계하는 자는 정·부회장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다.

3. 방식 : 학생회장 1명(2학년)과 부회장 1명(2학년)을 러닝메이트(running mate)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학년회장, 부회장은 독자 출마 방식으로 진행. (다득표 순으로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

4. 선거일 : 선거일은 학교운영 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매년 1학기 중간고사 전에 선출)

5. 제출서류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 2) 담임 추천서 및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한 추천서 1부
- 3) 교사 3인 추천서 1부
- 4) 공약서 1부
- 5) 서약서 1부

6. 선거절차

- 1) 사전 선거 지도

학생자치의 의의와 민주적 선거 절차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2) 선거일 공고

학생회 선거일을 1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 공고 시 입후보자 등록일도 함께 공고한다.

3) 입후보자 등록

가)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17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선관위는 등록 명부를 작성한 후 추첨을 통하여 후보 순위를 정한다.

다) 학생회장, 부회장은 개인별로 입후보해야 한다.

4) 선거운동

가) 기간 :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 당일 08시까지로 한다.

나) 방법 : 후보자는 학급 순회 연설 등 건전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 당선무효 : 당선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며, 당선 후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화한다.

라) 홍보물 원고 : 선거운동에 사용할 홍보물 원고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벽보 내용 :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바) 벽보 :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사) 벽보 관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아) 벽보의 규격 : 사진이 부착된 2절지 5매 이내로 한다.

5) 입후보자 소견 발표 :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판단 기회제공을 위해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각각 1회 실시한다.

가) 기호 순으로 10분 이내로 한다.

나)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발표한다.

다) 발표 전 입후보자는 반드시 발표 내용 및 공약 사항을 선관위에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소견을 발표한다.

7. 선거관리

1) 선관위의 임무

1. 선관위는 선거 전반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개표 및 집표과정을 담당·관리 토록 한다.

2.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선관위는 회의를 열어 선거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2) 선거관리 위원장

선거관리 위원장(이하 “선관위장”이라 한다)은 학생회장이 겸임하며, 선관위장은 선거 공정성의 책임을 진다.

3) 투표

가) 투표방법 : 민주적 절차와 방법(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으로 투표한다.

나)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다) 투표소의 설치 : 투표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선거 당일 1일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라)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 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의 날인이 되어야 한다.

#### 4) 개표

가) 개표소는 교내의 지정 장소에서 행한다.

나)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다)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개표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라)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인 입회 아래에 한다.

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공고한다.

바) 투표결과는 개표가 완료된 후 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 수를 각각 공표한다.

#### 5) 동점자 처리

투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최다 투표 2인을 전체 학생들의 재투표로 결정한다.

#### 6) 당선

가)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개인별로 최다 득표한 1명이 당선된다.

나) 개표 완료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당선자가 확인 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명한다.

다)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결격유무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결격유무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장 학생의 참정권 보장

### 제 43 조 【학생의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제2장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1.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2.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공직선거법] 현행 법률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①만 18세 이상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입후보 가능함.

3.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4.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5.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유권해석을 지켜서 참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교실 마이크나 학교 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직선거법」의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하에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4. 학생지도

### 제 1 장 생활지도

#### 제 44 조 【생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 각 부서의 자율적 행동을 최대한 권장, 지도한다.

#### 제 45 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단체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제 46 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진로개발역량의 기초가 되는 공정적인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을 발전시키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키는 지도를 한다.
2. 일과 직업세계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직업의식과 태도를 갖추게 지도한다.
3. 희망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탐색과 아울러 고등교육기회 탐색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한다.
4.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를 다각적으로 디자인해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5.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진로활동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자원의 네트워킹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간과 참여 학생의 규모를 고려한 진로지도를 한다.  
(지역사회자원 : 지역 내 산업체, 관공서, 관내사회인사, CEO 등)
6. 진로지도 시에 양성평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하여 성별(남여), 나이, 외모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진로지도 해야 한다.
7. 모든 학생들은 발전 가능성의 무한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적(교내외평가 결과)을 잣대로하는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평등한 교육(진로교육 등)을 해서는 안된다.

#### 제 47 조 【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학생생활교육을 한다.

#### 제 48 조 【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언어폭력 등)을 금지하며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1. 명상의자에서 10분 이상 눈감고 침묵하며 명상하기

2. 제시된 명언이나 한자 반복해서 쓰기
3. 부모님께 편지쓰기
4.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쓰기
5. 지정된 교사와 대화하여 상담하기

**제 49 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2 장 포상****제 50 조【종류】**

학생 생활에 있어 규범적 생활 습관의 형성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학교장이 표창 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에 관련된 표창은 학업성적 관련규정에 의한다.
2. 개근 및 정근에 관한 표창은 학생성적 및 포상에 관한 사정규정에 의한다.
3. 행동발달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관련되는 표창으로는 대외상 및 대내상으로 구분하고, 대내상은 당해 학년도 연간 생활지도 계획에 의거 표창의 종류를 결정한다.
4. 표창 분야 및 종류는 다음의 내용에 의한다.
  - 1) 행동 분야(모범학생표창)
    - 가) 효행상
    - 나) 선행상
    - 다) 봉사상
    - 라) 리더십
  - 2) 특별활동분야
    - 가) 문학상
    - 나) 경시대회상

**제 51 조【선발 방법】**

각종 표창은 전 교직원 및 각 부서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52 조【선발 기준】**

개인 및 학급표창, 대외상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개인표창 선발기준
  - 1) 행동분야
    - 가) 모범상 : 제규정 준수(용의·복장, 인사예절 등) 및 교사·학생이 인정하는 학생
    - 나) 효행상 : 경로 효친 사상이 투철하고,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한 학생
    - 다) 선행상 : 이웃이나 급우의 어려움을 돌보고 헌신하는 학생
    - 라) 봉사상 : 봉사심이 투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봉사 실적이 뚜렷한 학생
    - 마) 리더십 : 자발적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학생
  - 2) 특별활동 분야
    - 가) 문학상 : 각종 글짓기, 독후감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

- 나) 경시대회상 : 각종 수학, 과학, 외국어 경시대회 입상한 학생
  - 다) 삭제
2. 학급 및 단체표창 선발기준
    - 1) 환경 미화 우수
    - 2) 예절 바른상
    - 3) 생활 지도 우수
  3. 대외상의 경우 해당 상의 기준에 따른 공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4. 공적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3학년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5. 삭제

#### 제 53 조 【표창인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는 전교 재적인원의 5% 이내, 학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학년 재적인원의 8~10% 이내에서 시상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 54 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 제 3 장 학생생활교육

#### 제 55 조 【학생생활교육의 원칙】

학생생활교육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1. 학생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학생생활교육은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학생생활교육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제 56 조 【학생생활교육의 심의】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보호자의 의견 진술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 57 조 【재심의 부의】

1.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교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퇴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 58 조【학생생활교육의 종류와 기간】**

학생생활교육의 종류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이수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제 59 조【학생생활교육의 방법】**

1.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안전부 지도교사(오전), 학년부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2. “사회봉사”는 출석으로 처리하며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위탁 교육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는 출석으로 처리하되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
4.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위 1항, 2항, 3항, 4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 60 조【학생생활교육시 부과 내용】**

학생생활교육처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재·교구 정비.
  - 3)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2.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민원 안내 및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

리한다.

4. 출석정지 기간에는 가정학습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5. 퇴학처분
  - 1)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학교교육에 대신하여 출석정지를 명하며 이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를 한다.
  - 2) 퇴학 처분과 동시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 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한다.  
다. 퇴학 처분 후 결과를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처분대장에 기재한다.
6.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제 61 조 【심의 확정】

학생 학생생활교육의 심의 확정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1.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사안은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사실조사를 토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퇴학 처분의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 제 62 조 【학생생활교육 시기】

학생생활교육 사안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학생생활교육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2. 학생생활교육이 결정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생생활교육에 협조를 구한다.
3. 학생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정기고사나 학교행사 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 63 조 【학생생활교육 해제】

학생생활교육 해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학생생활교육 해제 학생은 담임교사의 책임 아래 개별 지도를 받도록 한다.
2. 학생생활교육 해제는 학생생활교육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해제한다.

#### 제 64 조 【학생생활교육내용 통보】

학생생활교육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학생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제 65 조 【학생생활교육의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학생생활교육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학생생활교육처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 66 조 【학생생활교육의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처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제 67 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 【용의복장 규정】 제 17조에 의한 별도 규정

구분		남학생	여학생	비고
두발	일반	○ 머리는 청결하게 유지한다.		
	기타	○ 파마, 염색, 탈색, 변형머리는 하지 않는다. ○ 무스, 젤, 헤어용품은 머리를 단정하게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복장	상의 하의	○ 등하교시에는 반드시 규정된 교복을 착용하고, 임의적 변형을 하지 않는다. ○ 생활복도 하복과 동복처럼 교복이므로 항상 규정에 맞게 착용하여야 한다. ○ 하절기, 교내에 한하여 규정된 체육복 하의와 생활복 상의를 허용한다. ○ 학교에서 허가된 학교로고가 새겨진 후드티도 동절기(환절기) 생활복으로 허용한다. ○ 여학생도 동/하복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외투	○ 규정된 교복을 꼭 착용하되 동절기에는 방한을 위하여 외투를 덧입을 수 있다. ○ 자켓 대신 후드티를 착용할 수 있다.		
	조끼	○ 규정된 교복을 착용하고 임의적 변형을 하지 않는다. ○ 동절기에는 방한을 위하여 규정된 교복이외의 규정된 카디건을 착용할 수 있다. ○ 춘추복 착용 시에는 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양말	○ 동절기에는 방한을 위하여 양말, 덧신을 신을 수 있다.		
신발	실내화	○ 실내화는 실내에서만 착용한다. ○ 실내화의 종류 : 슬리퍼, 끈이 없는 흰색 운동화		
	실외화	○ 실외화는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 실외화는 운동화나 단화를 신는다.		
기타	명찰 교표	○ 교복의 규정된 위치(왼쪽)에 명찰과 교표를 단다. ○ 교내 펼히 부착, 교외 텔부착 가능		
	장신구	○ 귀걸이, 발찌 등 화려한 장신구와 도를 넘는 피어싱은 개인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지 않도록 한다. ○ 안전한 학교 생활, 단체 활동에 문제가 없을 경우 개성,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가방	○ 학생용 가방(배낭형)으로 하되 보조가방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학생용 가방 착용 후 보조가방을 사용한다.		
	기타	○ 학생의 신분을 넘어서는 화장(속눈썹, 눈화장)을 하지 않으며, 특히, 학생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화장은 금지한다. ○ 학습 활동이나 건강한 학교생활에 위험할 수준의 손발톱을 기르지 않도록 한다. ○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는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단,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교복 사양서】

- 본교의 교복이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매년 제시되는 교복사양서에 의한 교복(생활복, 후드티 포함)을 말함.

#### 1) 섬유 혼용률

##### 가) 동복(춘추복)

사진 이미지	구분	섬유 혼용률
	상의	자켓 겉감T/W 울 80%, 폴리 20% 안감 : 폴리 100%
		셔츠 폴리 65%, 레이온 35%
		조끼 울 50%, 아크릴 50%
	하의	겉감 : 울 60%, 폴리 40%

## 나) 하복(생활복, 체육복)

사진 이미지	구분	섬유 혼용률
	상의	셔츠 레이온 25% 폴리에스테르 75%
		하의 울 50% 폴리에스테르 50%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상의, 하의	폴리에스텔 100% (기능성 원단)
		

2) 디자인, 색상- 본교 재학생과 동일

3)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 ① 길이- 하복(생활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 접분량-3cm이상)
  - 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 접분량-3cm이상)
- ②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 접분량-양쪽 2cm이상)

<스커트>

- ① 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 접 분량 - 5cm이상)
-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

- ① 길이- 동복 : 복사뼈 아래로(단분시 접 분량 - 5cm이상)  
하복(생활복) : 무릎뼈 중간지점(단분 시 접 분량 - 5cm이상)
- ② 바지통- 7½~8인치정도

<기타>

- ① 동복 자켓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 ②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 ③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을 지양할 것
- ④ 교복 안감의 색상은 겉옷과 동일하게 하며, 동일한 안감을 사용할 것

## 【학생생활교육 기준표】

구분	항목	사안내용	정계사항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 본 생 활	1	언행과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2	용의 및 복장이 바르지 못해 지도를 받은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			
	3	삭제					
	4	학교에서 불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다니다 지도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			
	5	용의 복장 규정을 5회 이상 지적 받은 학생	●				
준 법 및 공 유 물 관 리	6	교직원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7	언행이 불량하여 학교내 교직원 및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8	교직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가한 학생			●	●	●
	9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권 훼손을 주동한 학생 및 가담 학생	●	●	●	●	
	10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11	공공기물을 파괴하거나 손괴한 학생	●	●	●		
	12	공공문서(제증명, 식권, 납부금고지서 포함) 및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한 학생		●	●	●	
	13	청소, 주변,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1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고 불경한 태도를 취한 학생(도주, 회피 등)	●	●	●		
	15	학교의 계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		
	16	고의로 방화를 했거나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학생			●	●	●
	17	학교 출입 시에 월담한 학생	●	●			
	18	‘학교내의 봉사’ 및 기타 처분에 불응한 학생(미인정으로 불참한 학생 포함)		●	●	●	
	19	‘사회봉사’ 및 기타 처분에 불응한 학생(미인정으로 불참한 학생 포함)			●	●	
	20	‘특별교육이수’ 및 기타 처분에 불응한 학생(미인정으로 불참한 학생 포함)			●	●	
	21	‘출석정지’ 및 기타 처분에 불응한 학생				●	●
	22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범행정도가 경미하여 훈방된 학생	●	●	●	●	
	23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학생,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학생			●	●	●
	24	불온문서를 소지, 탐독한 학생이나 제작, 게시, 유포한 학생			●	●	
	25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한 학생	●	●	●	●	
학 생 회 장 선 거	26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중의 개별 선거 집회를 연 학생	●	●	●		
	27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개별 벽보를 부착한 학생	●	●	●		
	28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학생	●	●	●		
	29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투표 및 개표 시에 부정을 한 학생	●	●	●		
	30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생	●	●	●		
집 단 행 위	31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사를 주관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32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학생	●	●	●		
	33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4	학생신분으로 참가할 수 없는 대외행사에 개인 및 단체로 출연 또는 출품한 학생	●	●	●		
	35	불량 동아리 카페를 조직, 운영하여 학교 명예를 크게 실추케 한 학생	●	●	●	●	●
	36	불량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37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구분	항목	사안내용	정계사항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수업 및 시험	3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	●	●		
	39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학생			●	●	●
	40	시험 답안지를 서로 바꾸거나 메모하여 이용한 학생	●	●	●		
	41	시험 정답을 보여 주거나 본 학생	●	●			
	42	시험시간에 통신기기를 이용한 학생		●	●	●	
	43	시험과 관련해 기타 부정행위로 판단된 학생	●	●			
	44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
	45	시험문제를 팀지, 절취하거나 또는 누설한 학생			●	●	●
근태	46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합쳐 5회 이상한 학생	●				
	47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합쳐 10회 이상한 학생	●	●			
	48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합쳐 15회 이상한 학생	●	●	●		
	49	정당한 사유 없이 진급을 위해 결석을 회피하고자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학생			●	●	●
	50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 누계 일이 5일~9일인 학생(내교통지서 발송)	●				
	51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 누계 일이 10일~14일인 학생	●	●	●		
	52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 누계 일이 15일~19일인 학생(내교통지서 발송)			●	●	●
	53	출석 정지 이후에도 바른 학생생활의 가망이 없는 학생					●
	54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외출 학생(중식 시간 등)	●				
	55	교내·외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한 학생	●	●	●		
약물 · 음주	56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복용, 전달, 판매 등 어느 한 부분이라도 관련이 있는 학생			●	●	●
	57	교내·외를 막론하고 술을 소지하거나 음주한 학생	●	●	●		
금품	58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학생	●	●	●		
	59	타인의 금품을 상습 절취한 학생		●	●	●	●
	60	타인의 금품을 갈취 및 강취한 학생		●	●	●	●
퇴폐 행위	61	도박, 성행위를 한 학생	●	●	●	●	●
	62	음란, 폭력물의 제작, 유포, 판매, 전시 등과 관련이 있는 학생	●	●	●	●	●
	63	타인을 회통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학생		●	●	●	●
	64	자동차 자가운전,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을 탑승하고 등-하교하는 학생	●	●			
	65	교외생활지도 및 연합교외지도시 지도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66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67	학생신분으로 출입할 수 없는 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	●	●
정보통신	68	수업 중에 허가 받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			
	69	정보통신매체 사용 시 정보통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기타	70	위 사안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계한다.	●	●	●	●	●

## 5. 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

※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19년8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단위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2020년3월1일부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한다. 본교 규정집에는 법률의 중요 항목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67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및 2021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 종합계획(안)」에 의거 정명고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68 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정명고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라 하고 정명고등학교에 설치한다.

### 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제 69 조 【위원의 구성】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366(2021.1.8.)

1. 위원장은 교감

2.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하고, 교감을 포함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장이 구성

3. 본교는 교사 5명, 학부모 5명으로(전체 10명) 구성한다.

① 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안내공문:정명-4436\(2023.01.11.\(화\)\)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② 전담기구 구성 및 선출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 **또는 전담기구 활동을 희망하는 학부모** 중에서 3명(3학년 1명, 2학년 2명)을 선출하고, 2023년 신입생 학부모 중에서 2명 선출함.(단, 1학년은 입학식 끝나고 학운위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

③ 1학년 위원이 위촉되기 전, 학폭 사안 발생 시 구성된 전담위원회의에서 협의한 후 처리한다.(단, 본 사안은 즉시 학교장과 학운위원장에게 보고한다)

4. 위원 구성 수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변경 운영할 수 있다.

## 2023학년도

### 제 70 조 【위원의 자격】

1. 본교 학부모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다른 학교 전담기구 위원과 겹칠 수 없음.

### 제 71 조 【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입법예고) :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추후 결원 발생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출 위촉한다.
3. 임기의 시작은 위촉일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일에 시작 된 것으로 한다.
4. 전담기구 위원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여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이 정지된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위원의 임기 만료 직전, 사안 발생시 차기 학년도 새로운 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 학교장은 활동을 허가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제 3 장 회의운영 등

### 제 72 조 【회의 등】

1.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2. 학교폭력 사안이 없어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실시한다.
3.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 제 73 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1. 학교폭력 신고접수 또는 학교폭력 사태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 · 실시
5.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 보고
6. 그 밖의 전담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74 조 【학교폭력 접수 이후 일정】

1. 사안조사 전에 관련학생 학부모에게 알림.
2. 사안조사는 ①빠른 시일 내에 ②수업권을 보장하며 업무를 진행함
3.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회의(학교폭력전담기구)를 진행함
4. 모든 일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진행함

### 제 75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할 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대로 처리한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건(사안)이 발생하여 처리할

## 2023학년도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 참고 1 【학생 사안별 처리 구분】

구분	성격	구성	처리사안
학교폭력전담기구	법정기구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선도위원회)	자치기구	교원	학교폭력 이외의 사안 (절도, 흡연, 교착위반 등)

### ※ 참고 2 【2023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연번	직위	성명	비고
1	교감		
2	교사		학생안전부장
3	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4	교사		전문상담교사
5	보건교사		보건교사
6	학부모		5명

### ※ 참고 3 【2023학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연번	직위	성명	비고
1	위원장		교감
2	부위원장		학생안전부장
3	위원		교무기획부장
4	위원		각 학년부장
5	위원		진로상담부장
6	간사		학생안전부 생활지도 담당

### ※ 참고 4 【2023학년도 체험학습활성화위원, 교복구매위원회】

## 6. 개정 방법 및 기타

### 제 76 조【개정 방법】

본 규정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개정안의 발의

1) 학생회 대의원의 제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사전에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학생회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채택된 개정안은 학생안전부에 이관된다.

2) 교원(교장, 교감 포함)의 제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가) 제·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전에 재적 교원 1/4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 나) 학생안전부장은 제안내용을 교직원회의가 있기 최소한 5일 전에 전체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교직원회의에서 재적교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교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3) 학부모회의 제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학부모회원은 사전에 재적위원 1/4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 나) 학부모총회장은 개정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이 통과된다.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제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가) 제·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전에 재적위원 1/4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 나) 위원장은 개정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이 통과된다.

5) 관계법이나 시행령의 제·개정과 그로 인한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정은 1 항의 개정안 발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2.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1) 발의된 개정안은 20일 이상 입안예고 되어야 하며 홈페이지, 설문지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 발의된 제·개정안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학생안전부 담당교사는 수렴된 의견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발의된 개정안과 함께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재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5). 학생들의 의견은 학급회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 발의된 규정의 심의를 위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교감
위원(12)	학생 대표(6인)	학생회장·부회장, 2학년 회장·부회장, 1학년 회장·부회장
	학부모 대표(2인)	학교운영위원회장, 부위원장
	교원 대표(4인)	학생안전부장,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간사		학생회 담당교사

-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와 운영 방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4.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여 빠른 시일 내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 2) 학생의 생활·인권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의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5. 학교장의 재가 및 공표

- 1) 학교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
- 2) 학교장이 제안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하여 반려하는 경우 그 의견을 명시하여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 3) 학교장은 학칙이 교육청에 보고되어 인가된 후 30일 경과된 이후에 공표하여 시행한다.

####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0일(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8월 16일(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